

☎044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3 / 전송(02)796-4487
정책국 국장 최윤배 [6530] 정책팀장 박우민 [6532] 주임 이정화 [6533] /jhpure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25-901호

시행일자 2018. 3. 20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15481호)공포 알림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1259(2018. 3. 13.)

3. 위 관련근거에 의거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제15481호)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송부 하오니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

- 임시마약류 지정기준(1군 또는 2군)정비
- 임시마약류 분류에 따라 법률 위반시 양형기준을 합리적·비례적으로 조정
- 시행일: 2018년 9월 14일

※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은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- 법령정보 - 법,시행령,시행규칙)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붙임 : 1.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
2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. 끝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